

의성군의회 공고 제2021-10호

「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의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7일

의성군의회 의장



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,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-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된 만큼 군민들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인용조항 변경(안 제1조)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근거규정(안 제2조)

○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임기(안 제4조)

○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(안 제5조)

3. 의견 제출

○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

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13일까지 의성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
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

□ 자치법규명 :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 【우편번호 : 37337】

의회사무과 (☎ 054-830-6391)

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의성군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성군의회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,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「의성군의회의
위원회 조례」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
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제7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
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
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
한다.

1.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
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이하 "심사요구의원"이라 한다)
2.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 대상자(이하 "심사
대상의원"이라 한다)

제8조(심문)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
심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
한다.

제9조(발언 및 변명)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
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
여야 한다.

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
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
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
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

정하여 이를 통지한다.

제10조(증빙서류 등의 제출)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·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11조(통보)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,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12조(제척과 회피)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13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)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14조(위임)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

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6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